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6일 04시 55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제설 제빙작업의 시기	3

제설 제빙작업의 시기

2014.04.17 조회수 526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43
담당부서	도로과
상위법령	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
조례	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6조
유형	3호 -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
법령공표일	누락규제
존속기한	2006-03-13
규제시행/폐지일	2006-03-13
규제내용	제6조(제설·제빙작업의 시기) 건축물관리자는 제설·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 야간(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)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·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.

[목록](#)[이전글](#)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41

[다음글](#)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45

Yeosu Web Contents

